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3
----------	-----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제안이유

-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관련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주소 변경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미징구 하는등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주요골자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 도시개발법 적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을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으로함
- 주소등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미징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호적등본 1통 제출 삭제함

 의안전문 : 따로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2항”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중 “법 제32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8조 및 제51조”를 “법 제27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17조·제21조 및 제25조제1항중 “법 제56조”를 각각 “법 제34조”로 한다.

별지 5의 첨부서류 “별첨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거소 변경시), 호적등본 1통(성명 변경시)”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중평 출장소중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도시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 4항----- ----- ----- -----</p>	<p>제1조(목적)-----도시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 4항----- ----- ----- -----</p>
<p>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p> <p>1-2. (생략)</p>	<p>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법 제11조----- ----- ----- ----- ----- -----</p>	<p>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법 제11조----- ----- ----- ----- ----- -----</p>
<p>제12조(환지면적의 기준) ①환지계획은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절충식 방 법을 원칙으로 하고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지로서 지정할 면적은 권리면적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 위치 또는 종전의 토지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내지④ (생략)</p>	<p>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①----- -----법 제27조 및 제31조----- ----- ----- ----- ----- -----</p>	<p>제8조(환지면적의 기준) ①----- -----법 제27조 및 제31조----- ----- ----- ----- ----- -----</p>
<p>제17조(토지의 관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책임으로 한다.</p>	<p>제17조(토지의 관리) 법 제34조----- ----- ----- ----- ----- -----</p>	<p>제17조(토지의 관리) 법 제34조----- ----- ----- ----- ----- -----</p>

현행	개정안
<p>제21조(환지예정지지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1조(환지예정지 지정) 법 제34조----- ----- ----- -----</p>
<p>제25조(환지예정지사용)① 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신청서를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1조(환지예정지 지정) 법 제34조----- ----- ----- -----</p> <p>②-③(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령 발 취

도 시 개 발 법

제11조(시행자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내지7.(생략)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내지5.(생략)
- ②내지④(생략)

제31조(입체환지) 시행자는 과소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환지에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②-③(생략)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에는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내지 제20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행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